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69

발의연월일: 2022. 11. 22.

발 의 자: 강민정 • 권인숙 • 김승원

문정복 • 민형배 • 양이원영

양정숙 • 이수진(비) • 이탄희

장경태 · 정필모 · 최강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으나,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 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부 사립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을 총장이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거나, 교무처장·부총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거나, 교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학교법인과 교원인사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원 전체회

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성별·연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교원인사위원회의"를 "그 밖에 인사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전체회의의"로 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성별, 연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급 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 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회"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신 설> <u>포함한 5명</u>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 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 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 정한다)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 의 2분의 1 이상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신	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 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 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 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 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성별, 연
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
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사위원회 및 제3
항에 따른 교원 전체회의의